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6. 6. 23

행정위원회

1. 審查經過.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5일 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보건위생과장 조병구)

가. 제정이유

- 지역주민 다수를 상대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
 - 최초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
 - . 1차 위반 : 100만원
 - . 2차 위반 : 200만원
 - . 3차 위반 : 300만원

다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 - 지역보건법 제26조
 - 제14차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(2006.3.17)
-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입법예고 : 2006.2.23 ~ 3.15 결과 : 별도의견 없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안 제2조를 살펴보면
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서울시 타 자치구의 부과기준을
참고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,

-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에 있어서는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부과·징수 절차의 명료화를 위하여 타구의 사례와 같이 사전통지와 처분통지에 있어서는 별지서식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안 제3조(청문)에 있어서는 의견진술의 기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10일 전까지 사전통지하여 의견진술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, 우리구의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에서도 10일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또한,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세세한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-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의 명료화를 위하여 처분전 사전 통지 규정.
- 처분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.
-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따른 준용규정 신설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“제2조(과태료 부과 등)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②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”를
“제2조(부과대상 및 기준)
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.”로 수정
- 안 “제3조(청문)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”를
“제3조(처분의 사전 통지 등)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서면·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”로 수정

○ “제4조(과태료 처분)

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「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과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”를 신설

○ 안 “제4조(불복)”을 “제5조(불복)”로 수정

○ 안 “제5조(과태료의 귀속)

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제6조(과태료의 귀속)

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로 수정

○ 안 “제6조(강제징수)”을 “제7조(강제징수)”로 수정

○ “제8조(준용규정)

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”를 신설

○ 안 “제7조(시행규칙)”을 “제9조(시행규칙)”로 수정

○ 별첨 :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

5. 審查結果 : 修正案 可決